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우체국·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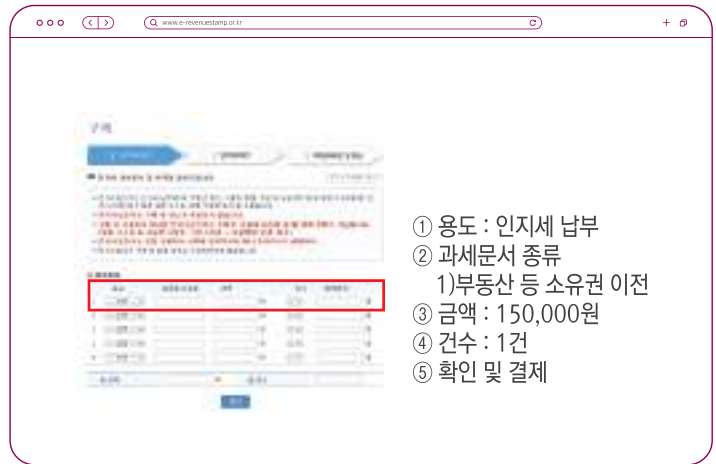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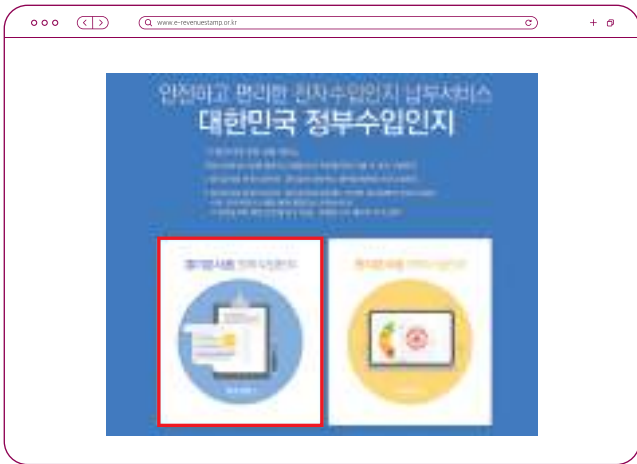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이상 ~ 10억원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※(관련법령)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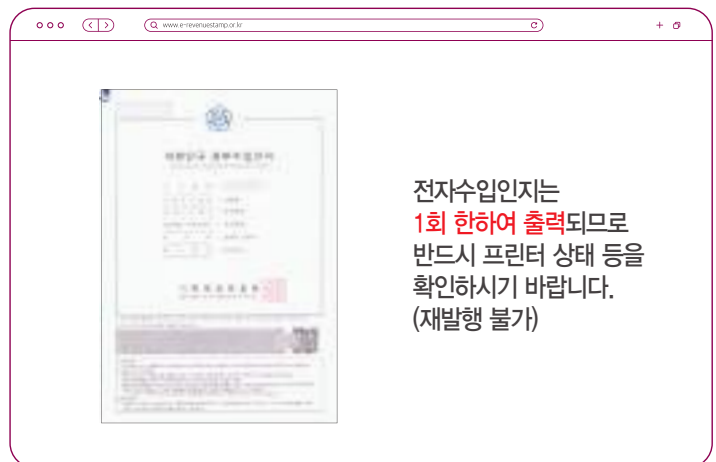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기한·방법	※ 「인지세법」 제8조 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·우체국·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- 1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-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- 4 구매-납부정보 입력



- 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- 5 출력



전자수입인지는
1회 한하여 출력되므로
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재발행 불가)